

NPFC 이행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

I. 개요

- (일시/장소) '24.10.23(수) 09:00~13:00(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한국, NGO 등 약 23명
- (주요의제) 전재 옵서버 프로그램, '심각한 위반', 공해승선검색, 전재 보존관리조치, VMS, '역사적 어획/노력 수준' 등

II. 주요내용

□ 계획 및 개발 소작업반(SWG PD) - 전재 ROP 논의

○ ROP 운영 및 사무국 역할

- 미국은 ROP 운영 및 사무국 역할에 대해 공통된 이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NPFC 전재 ROP에 국내 옵서버가 포함되는 것이면 WCPFC ROP와 같이 국내 옵서버 프로그램 승인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고 옵서버 파견 관련 회원국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음
- 일본은 지난 회의까지 논의한 결과로 마련된 현재 문구는 IATTC식 접근을 하는 것으로, 사무국이 서비스 제공업체와 함께 옵서버 교육과 파견을 담당하고, 국내옵서버도 활용할 수는 있으나, NPFC 사무국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승인 과정은 불가함을 언급하였음
- 중국도 일본 의견에 동의하였음

○ 양방향 통신수단

- 일본은 양방향 통신수단은 옵서버를 위해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닌,

선박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접근에 제약이 없어야 함이 포
인트임을 언급하였음

○ **옵서버 독립성**

- 중국은 옵서버는 선사로부터 급여를 전부/일부 받고 있는바, 'direct financial interest'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함을 언급하였음

○ **옵서버 장비**

- 중국은 '필요할 경우(Where deemed necessary) 기타 안전 장비를 제공...' 문구에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를 제기하며 '필요할 경우' 문구 삭제를 주장하였음

- 미국은 'personal waterproof lifesaving beacon'과 'personal locator beacon'이 같은 것이면 1개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음

○ **사무국의 ROP 정보 제공**

- 캐나다는 관찰된 전재에 관한 모든 원본 데이터('all raw data')를 기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며 all 대신 relevant 또는 necessary로 문구 수정을 제안하였음

- 미국은 조항의 의도에 의문을 표명하였고 전재 정보는 전재에 관한 TCC 연례보고에 포함되거나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공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사무국의 옵서버 제공업체 승인**

- 중국은 사무국이 5년마다 옵서버 제공업체를 승인하는 것은 불필요함을 제기하였고 IOTC, ICCAT에서도 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옵서버 제공업체와는 주기적인 계약을 맺고 있고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재정위에서 논의됨을 언급하였음

○ 전자감시시스템(EMS)

- 대만은 전제 시 사람 오피서버 임무와 사무국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EMS 관련 모든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였음
- 중국은 다른 RFMO들에서는 운반선을 위한 EMS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EMS 관련 모든 조항 삭제를 주장하였고 EMS를 도입하고자 하면 운반선이 아닌 조업선부터 해야 함을 언급하였음
- 일본은 우선순위는 사람 오피서버이고, EMS는 오피서버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보며 논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음
- 캐나다는 전제 CMM에 '전제 오피서버 프로그램 CMM을 보완하는 EMS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문구를 상기시켰음

○ 오피서버 임무

- 중국은 어종별 중량 추정은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하며 통일된 방법론이 필요한지 여부를 제기하였음
- PEW는 WCPFC에서 비어류 이전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본 조치에서도 비어류 이전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기하였고, 일본은 해당 사항은 전제 CMM에 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불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중국은 오피서버에게 전제 신고서 서명 의무가 있으므로 전제 사전 신고서에 대한 서명은 불필요하고 수정 신고가 많으므로 실행하기 어려움을 언급하였음
- 중국은 입항 후 하역되는 어획물에 대한 감시는 당국의 역할이므로 오피서버에게 입항 후 하역되는 어획물을 관찰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됨을 주장하였음

□ 운영 소작업반(SWG OPs)

○ '심각한 위반'

- 일본은 공해어업협정, NPFC 협약, NPFC CMM 등에 '심각한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이것들을 종합한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우선 할 수 있고, 그 후 이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다른 '심각한 위반'들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음
- 캐나다는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에 판단이 개입되고 이 판단을 위한 기준이 현재 없음을 언급하였음
- 의장은 본 과제의 작업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하였고, 작업 방향에 관해서 TCC에 지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공해승선검색(HSBI)

- HSBI 업데이트에 대해, 캐나다는 11월 작업반 회의에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일본은 기밀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서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음
- HSBI 계획에 대해, 회원국들은 본 문서가 법적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형식적인 반복적 제출보다는 문서 내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선호한다고 언급되었음. 사무국이 문서에 대해 제출된 수정의견들을 회람하고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전제 보존관리조치

- 의장이 9월 작업반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정식 제안서를 1월 작업반 회의 전까지 회람하기로 하였음

○ VMS 입/퇴역 보고 절차 및 완충지대(buffer zone) 고려

- 현재 서비스 제공업체가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무선전송장치(MTU) 유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무국이 회원국들의 FMC와 협업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MTU 목록(inventory)을 만들 것임을 언급하였음
- 회원국들이 입/퇴역 보고 옵션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VMS CMM 개정 문구가 준비되어야 함이 언급되었음. 사무국은 회원국이 개정 제안서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환영한다고 하였음
- * **(옵션1)** 협약수역 입/퇴역시 선박에서 자동적으로 기국 FMC에 보고되고 FMC에서 사무국으로 보고가 전달
- (옵션2)** 협약수역 밖 20해리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본 완충지대 내에 있을 경우 협약수역 내에서도 같이 VMS 보고
- (옵션3)** 협약수역 밖 1개 지점에 대해 사무국이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 제공업체가 알고리즘을 통해 선박의 입/퇴역 지점을 확인
- (옵션4)** 옵션2 + EEZ와 협약수역 간 입/퇴역시 입역 전 마지막 지점 및 퇴역 후 최초 지점을 보고
- 일본은 현재 사무국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고 옵션3을 선호함을 언급하였음

○ 역사적 어획/노력 수준

- 사무국은 9월 작업반 회의에서 마련한 표*를 회원국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갖고 있는 정보(과거 연례보고들에서 제출된 정보)와 비교하겠다고 하였음

Year	Bottom Fish		Pacific saury		Chub mackerel		Blue mackerel		Japanese sardine		Noon flying squid		Japanese flying squid	
	# Vessels	Gear	# Vessels	Gear	# Vessels	Gear	# Vessels	Gear	# Vessels	Gear	# Vessels	Gear	# Vessels	Gea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일본은 선박 척수는 활동하는(active) 척수가 아닌 허가된(authorized) 척수여야 함을 언급하였고, 연도를 '09~'18년이 아닌 '09-'24년까지 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회원국이 여러 유형의 어구를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어구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함을 언급하였음
- 캐나다는 활동하는 척수가 중요한 정보임을 언급하며 활동하는 선박 정보도 필요하다고 하였음. 일본은 활동하는 선박 정보는 NPFC 웹 사이트 내 NPFC footprint에서 가용하다고 언급하였음

○ 기타

-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이행보고 질문지가 송부되었다고 언급하였고 12.18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차기 작업반 회의: 11.22~23